# 대여금

[수원지방법원 2019. 6. 18. 2018나83000]



# 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 원고 (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)

【피고, 항소인】 주식회사 해창 (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준)

【제1심판결】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, 9, 21, 선고 2017가단124165 판결

【변론종결】2019. 5. 30.

#### 【주문】

#### 1

- 1.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- 가.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2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1.
- 1.부터 2019. 6. 18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나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 총비용 중 3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- 3. 제1의 가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## [이유]

#### 11. 인정사실

- 가. 원고는 2011. 10. 20. 주식회사 이도이엔씨종합건축사사무소(이하 '이도이엔씨')와 사이에 2억 원에 관한 투자 약정 (이하 '이 사건 투자약정')을 체결하였는데, 그 투자조건은 다음과 같다.
- 나. 원고와 이도이엔씨는 원고가 2011. 10. 20.까지 이도이엔씨가 지정하는 계좌에 투자금 2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, 원고는 약정한대로 2011. 10. 20. 이도이엔씨의 대표이사 소외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[계좌번호 : (계좌번호 1 생략)]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다.

- 피고는 2012. 11. 30. 이도이엔씨를 흡수합병 하였는데, 원고는 이도이엔씨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.
-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호증의 각 기재, 제1심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 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- 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- 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도이엔씨를 흡수합병 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  - 나. 피고의 주장 및 판단
- 1) 투자금 일부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
- 피고는, 이도이엔씨가 2011. 11. 30.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, 이로써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.
-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의하면, 소외인이 2011. 11. 30.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[계좌번호 : (계좌번호 2 생략)]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- 그러나 갑 제5,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,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1억 원의 명목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- 2) 주식 양도 약정 내지 개인간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
- 피고는, 이 사건 투자약정이 원고와 소외인 개인 간의 투자 약정 또는 주식 20,000주에 대한 양도약정이라고 주장한다.
- 갑 제1호증의 기재,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이도이엔씨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,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소외인 개인 간의 투자 약정이라거나, 단순히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.
  -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- 3) 대표권 남용 주장 및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
- 피고는,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도이엔씨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대표권을 남용하였고 , 원고는 소외인의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, 이 사건 투자약정은 대표권의 남용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,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- 또한 피고는,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게 될 경우, 원고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, 위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나아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이후에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어서,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.
- 4)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

가) 주장

피고는,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르면 이도이엔씨는 원고에게 투자금 2억 원을 2012. 1.부터 매월 280만 원씩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, 이는 이도이엔씨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, 상사채권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 용된다고 주장한다.

# 나) 관련 법리

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, 그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(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).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,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(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104246 판결 등 참조).

# 다) 판단

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, 이도이엔씨는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 일반건설업(토목, 건축공사업),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에 종사한 사실, 이도이엔씨는 '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환경, 교통영향평가의 사업경영'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았고, 원고는 이 사건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원고도 이를 인식한 경우로 위 투자금 반환 채권 또한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채권은 2012. 1.부터 매월 280만 원씩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원고의 이사건 소는 2017. 11. 17.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, 원고의 투자금 반환 채권 중 2012. 1.부터 2012. 10.까지 발생한 채권 합계 28,000,000원(= 2,800,000원 × 10개월)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, 172,000,000원(= 200,000,000원 - 28,000,000원)이 남게 된다.

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.

# 5)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

이도이엔씨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이도이엔씨 회사의 주식 20,000주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, 갑 제4호증, 을 제7, 8호증의 각 기재,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도이엔 씨가 피고와 합병을 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이도이엔씨 20,000주는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주식 12,560주로 변환된 사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실, 원고도 위 주식은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,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을 경우 피고에게 주식을 반환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.

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주식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.

다.

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2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금 반환 종기 다음날인 2018. 1. 1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. 6. 18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) 제2조 제1항,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금 반환 종기 이전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, 이도이엔씨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거나 민법 제388조에 따른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또는 당사자 사이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존재한다는 점 등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,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(민법 제153조),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#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,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[별지 생략]

판사 최창석(재판장) 조장환 박소정